

문서번호	상가운영처-556
보존기간	운영구
결재일자	2022.01.12.
공개여부	공개

★과장	팀장	상가운영처장	복지경제본부장	
협 조	팀장			
	현장소장			
	현장소장			
	현장소장			
	현장소장			
	현장소장			
	팀장			

2022년 상가운영처 안전보건관리계획

2022.

2022년 상가운영처 안전보건관리계획

상가운영처 직원의 안전한 일터 및 이용시민이 안심하고 이용 할 수 있는 지하도상가를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I 관련근거

- 공단 안전보건관리 규정 21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2022년 안전보건관리계획 (안전처-24호, 2021.01.03.)
-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및 시행 (2022.01.27.)

II 시설물 및 인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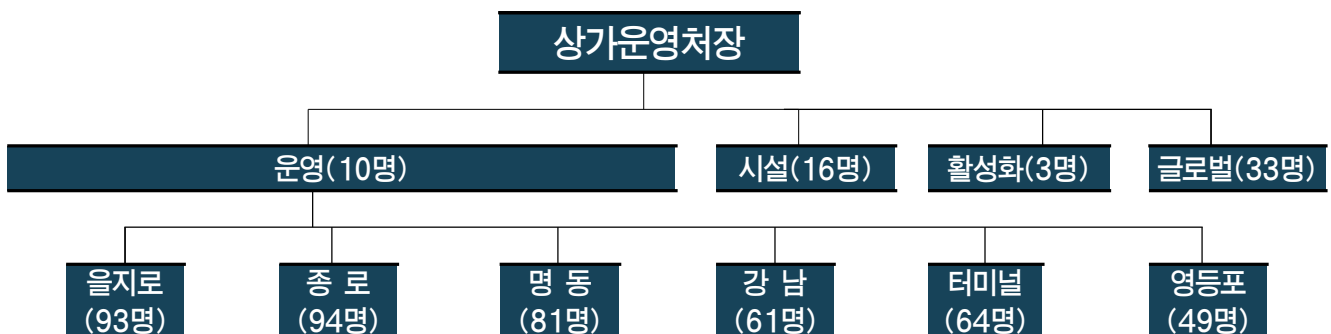
- 시설물 현황(시설물 안전법 상 구분)

구분		계	을지로	종로	명동	강남	터미널	영등포	글로벌
연면적	이상	21	5	4	4	4	1	2	1
2000 ^m	미만	5	1	4	-	-	-	-	-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공중이용시설 : 21개소
 - 연면적 2,000^m 이상 지하도상가 20개소
 - 연면적 3,000^m 이상 건축물(업무시설) 1개소

- 인력현황 : 4팀 6관리소

- 근무특성 : 지하도상가 설비 운영 및 유지보수, 건축물 구조체 관리
실내·외 청결유지, 경비 및 순찰, 보안업무 등



III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 분석

□ 시민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유형별 발생 현황(발생일 기준)

구분	계	넘어짐	시설미흡	미끄러짐	기타
건수	13	-	-	-	-
'19년	2	2	-	-	-
'20년	6	4	-	2	-
'21년	5	4	1	-	-

□ 산업재해 발생현황

○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연번	승인확정	유형(원인)	사고내용(요약)
1	2021년	기타	시민에게 맞아 상해
2	2020년	출퇴근	자전거로 출근 중 넘어짐

○ 유형별 발생현황

※ 승인확정일 기준

구분	계	미끄러짐	출퇴근	넘어짐	근골격계	교통사고	부딪힘	베임	헛디딤	기타
건수	2	-	1	-	-	-	-	-	-	1
'20년	1	-	1	-	-	-	-	-	-	-
'21년	1	-	-	-	-	-	-	-	-	1

《 분석 》

- 지난 3년간 지하도상가 내 시설관리 중대결함으로 인한 중대재해는 없었으나, 경미한 결함이나 개인 부주의로 시민 안전사고 13건, 직원 산업재해 2건 발생
- 다수의 시민 안전사고는 공용부(계단, E/S)에서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로 원인은 청소 후 잔여물기 또는 개인 부주의로 발생함에 따라 좀더 세밀한 관리와 이용자 안전주의가 필요하며, 산업재해의 경우 출퇴근길 자전거 사고, 직원 상해사고로 출근길 및 지하도상가 근무 중 발생가능 위험요인 사례별 산업·안전보건교육 필요
- 중대재해처벌법(2022.1.27. 시행) 및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대비 직원·시민 안전사고 예방과 사전 위험요인 관리를 위한 안전보건 대응관리 방안이 요구됨

IV 안전예산

□ 시설물 정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지하도상가	5,582	5,476	5,059	4,307
글로벌센터	127	116	236	268

□ '22년 중대재해예방 안전예산 세부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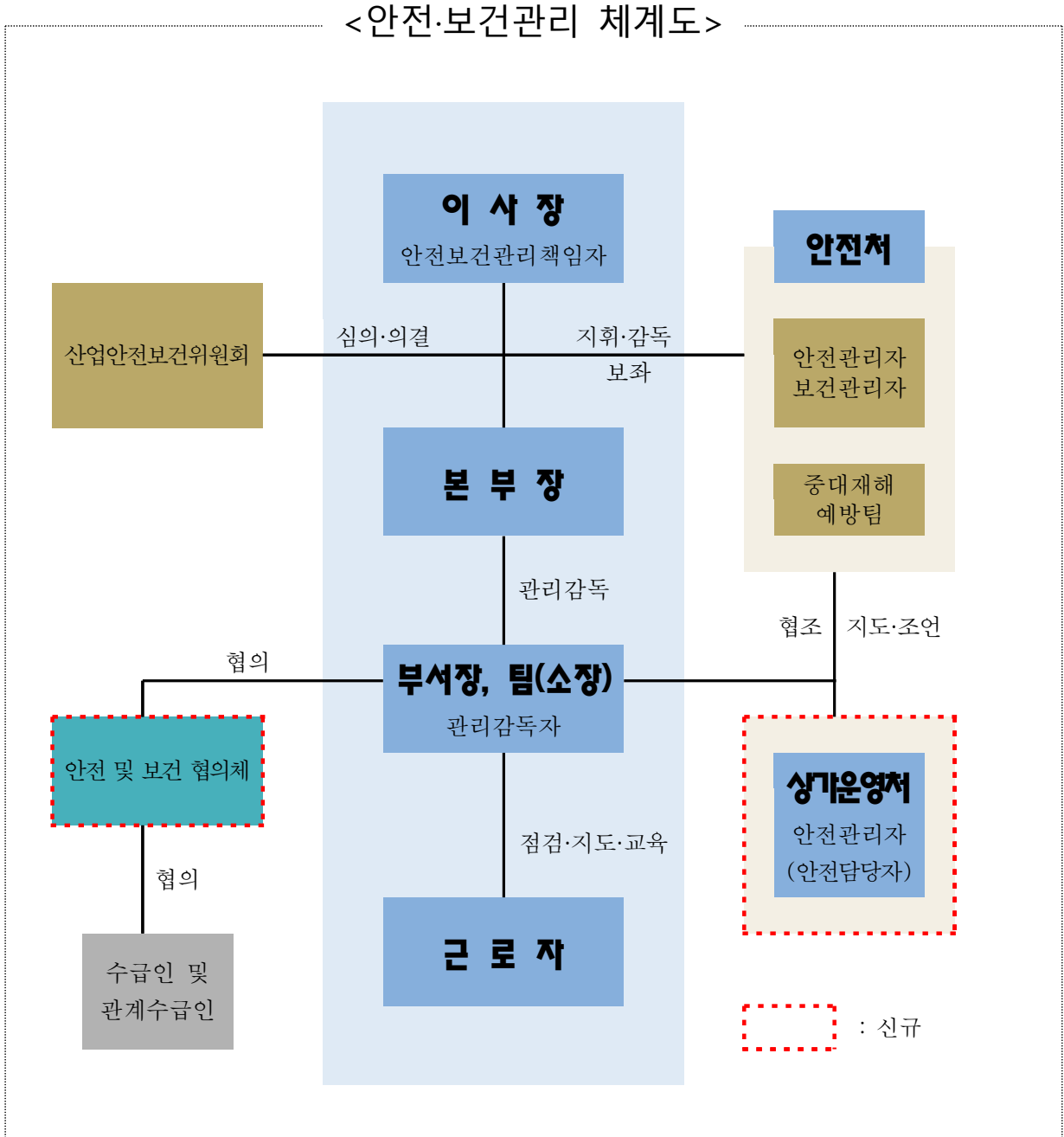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예산	비고
1	일상 유지 관리	안전점검 ○ 시설물(구조물, 소방, 가스, 전기, 기계) 법정점검	392	수선 유지비
2		안전점검 ○ 글로벌) 소방, 냉난방, 기계장비 등 점검	25	
3		시설물 ○ 시설물(건축, 소방, 전기) 연간 유지보수	280	
4		승강설비 ○ 승강설비 법정유지관리 용역	300	
5		냉난방설비 ○ 냉난방설비 정비(세관 및 핀 세척)	300	
6		공기질설비 ○ 공기질 유지관리 사업	566	
7		유지보수 ○ 글로벌)전기, 기계, 통신 승강기 등 유지보수	243	
8	계속 사업	시설물 ○ 시설물 구조체 보수·보강(균열 및 누수 보수)	180	구축물 수탁
9		시설물 ○ 재해복구·영조물손해배상 공제보험 가입	276	
10		냉난방설비 ○ 청계5가 지하도상가 노후 냉·난방설비 교체	139	
11		승강설비 ○ 승강설비 안전사고 예방정비	250	
12		수배전설비 ○ 을지로권 지하도상가 노후 수배전반 교체 사업	500	
13	신규 사업	통신설비 ○ 지하도상가 재난안전용 무전기 교체 사업	544	수선 유지비
14		승강설비 ○ 승강설비 추가 안전장치 선제적 설치	250	
15		중대재해 ○ 중대 산업·시민재해 예방 및 안전강화 사업	240	
16		중대재해 ○ 중대 산업·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위탁점검	90	
합 계			4,575	

V 안전 · 보건 관리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 안전·보건 관리 조직

○ 조직개요



○ 상가운영처 전담 안전관리자 지정 운영

- 부서 인력 500명 이상으로 전담 '안전관리자'선임하여 산업재해 예방
- 산업안전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확인 철저히 각종 산업재해 대비
- 유해·위험요인 사전 발굴 및 조치로 산업재해 예방

상가운영처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 의무 이행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사업장별 규모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22.1월까지
	안전보건 전담조직 및 전문 인력 총원협의 및 채용	안전처 인사노무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예산 확보	예산 편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근로자참여 활성화	분기별/수시
산업재해 예방관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전 사업장)	매년 1월초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파악제거, 위험성평가 실시(전 사업장)	연중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시 안전보건 평가기준 준수	업체선정 시
	재해 발생 처리절차 준수,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보고	재해발생 시
이행점검· 평가개선	안전관리 현황 및 의무사항 이행실태 점검 점검 결과 문제 사항 개선 반영	연 2회 수시
	도급, 용역, 위탁관리 안전보건 관리점검	수시
	안전보건 교육대상자 법정 의무교육 이수	수시

① 중대재해 발생대비 대응 계획

□ 공사·용역 도급사업 안전관리

○ 도급사업 시행 전 운영 사항

- 발주 시 공사설계설명서, 지침서 등에 **위험성평가 시행 안내**
-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의견청취를 위한 **협의체 운영 안내**
 - ※ 도급별 위험성평가 점검 후 협의체 운영시 개선사항 논의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인력지정**
 - ※ 현장대리인 겸임가능 명시 → 투찰자가 인지 가능하도록 발주서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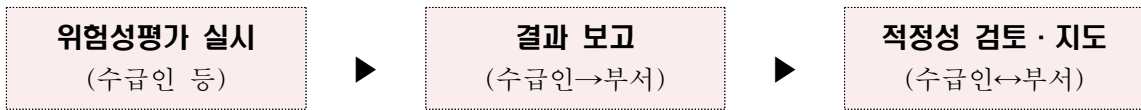
○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위험요인 점검포함

《관련법령》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 유해·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업무 처리 절차 마련
-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종사자 의견청취

- 대 상 : 사업장 및 발주하는 모든 사업
- 점검시기 : 착수 전 및 작업 전후 수시
- 주요내용 : ‘위험성평가’ 및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 협의체 구성
 - ┌ 공 단 : 발주 담당자, 안전 담당자, 담당 팀·소장
 - └ 도급사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현장소장, 대표 등
- 안전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위험성평가, 작업환경측정, 안전정보제공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등

- 안전관리자(도급사)는 유해 위험요인을 수시로 감독에게 보고

1단계		2단계
근로자 의견 청취 ... 연2회 이상 ·내 용 : 위험위험요인 등 의견청취 ·참석자 : 근로자 및 팀·소장(주최자)	⇒	노·사 논의 ... 연1회 이상 ·내용 : 1단계 의견 취합 후 예산반영 논의 ·참석자 ┌ 사: 처장, 팀·소장, 안전담당자 └ 노: 지부장, 산업안전국장

- 모든 발주사업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 회의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선방안 마련
- 단, **30일 이내**에 종료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의 경우 협의체 구성·운영하지 않아도 됨

※ 고용노동부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2020.03) p.31

▶ 예외 공사건이라도 착수시 1회 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시행

□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복구 매뉴얼 마련

○ 기존 「지하도상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기대응 업무처리절차」 추가 정비

위기대응 업무처리절차	세부업무사항
▷ 중대시민재해 사상자 긴급구호조치	· 응급조치 시행
▷ 재해발생 공중이용시설 긴급안전점검	· 현장통제 및 응급복구 실시
▷ 재해발생 시설 긴급보수	· 긴급복구 인력·장비 투입
▷ 추가 피해방지 조치 방법 ※ 위험표지 설치 등	· 피해지역 주변정리 · 2차피해유발 방지 구조물 점검
▷ 상황 보고체계 유지 ※ 안전총괄기관, 시장단, 유관행정기관 등	· 관계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 사업소간 협조체제 유지
▷ 원인조사에 따른 개선조치 등	· 유사재해 재발 방지 노력

2 시민 및 근로자(종사자) 안전 대응 계획

□ 근로자 위험작업 거부권 제도 운영

《관련근거》

- 안전처-6526(2021.12.01.) 『직원 「위험작업거부권」 단계별운영계획』

○ 주요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상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부여 (제52조)
- 안전시설 미비 등 위험상황시, 스스로 작업 거부 권한 제도화
- 우선적 공단 직원 대상 시행 ※ **도급사 근로자까지 확대 시행 검토**

○ 작업거부 적정성 판단 심의 절차

- (판단기구) 부서 위원회 개최 *안전처 참관
 - 1차 위원회 ▭ 사측 - 처장, 시설·운영팀장, 거부권행사 관리소소장, 타소장
 - ▮ 노측 - 지부장
- (개최시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작업거부 보고 후 **가능한 즉시 늦어도 24시간 이내(1근무일 이내)** 개최 원칙
- (판단기준) 산업안전보건기준, 부서별 위험성평가 결과 등 기준 고려
 - ▶▶ 시민 피해 등 위험상황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시민 안전 병행 고려

- (심의조치)
 - ┆ 작업거부 타당시 → 안전보건 필요조치 이행 후 작업재개
 - ┆ 작업거부 부당시 → 즉시 작업재개 지시
 - ┆ 판단 곤란시 「안전처 주관 2차 위원회」 로 이관
- 2차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구분		대상자	비고
위원장(1)		· 복지경제본부장	
내부 위원	사측위원 (5)	· 안전처장, 상가운영처장 · 시설, 운영팀장, 해당 관리소장	
	노동조합측 위원(5)	· 상가지부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 · 대의원 등 3명	
외부위원(3)		· 관련학과 교수, 산업안전전문기관 전문가	
간사(1)		· 안전처 팀장	

※ 관련문서 : 기획조정실-7265(직원 「위험작업거부권」 시행방안(알림))

□ 시설물 비상상황 대피훈련 등 업무절차 마련

- 훈련대상 : 「시설물안전법」 상 1종 시설물 (4개소)

구분	대상
1종(10,000㎡이상)	강남터미널, 영등포역·로터리, 소공·명동, 잠실지하광장

- 훈련내용 : 시설물의 비상·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피훈련
- 훈련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계획 수립 등

□ 유해·위험요인 사전제거 활동 지속 추진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2인1조 작업관리 강화
 - 개요 : 위험작업의 단독작업 제한으로 근로자 안전강화
 - 작업대상

구분	전기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기타
공중	전기작업	맨홀작업, 정화조 작업, 시설물 점검	고소작업대, 이동식사다리, 천정작업	보일러작업, 용접작업

- 상가운영처 적용대상

2인1조 작업 공종	적용기준
전기작업	전압이 75볼트 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보일러작업	보일러(소형 보일러 등은 제외한다)의 설치 및 취급 작업
맨홀작업	맨홀 내 수도계량기 점검 및 대형 수도계량기 교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용접작업, 습한 장소 전기 용접작업
천장작업	덕트 급배기시설 등 점검 작업
이동식 사다리 작업	경작업(전구교체 작업 등), 고소작업대·비계등 설치가 어려운 협소한 장소 작업
정화조·집수정 작업	정화조·집수정 내부 펌프점검

○ 산업재해예방점검 시 이행 여부 확인

○ 말비계형 사다리, 고압 절연장화·장갑 및 안전모 등 구매

□ 중대산업·시민 재해 유해·위험요인 및 의무이행사항 점검

○ 부서 사업장 안전관리자 유해·위험요인 점검

- 안전처 중대재해예방팀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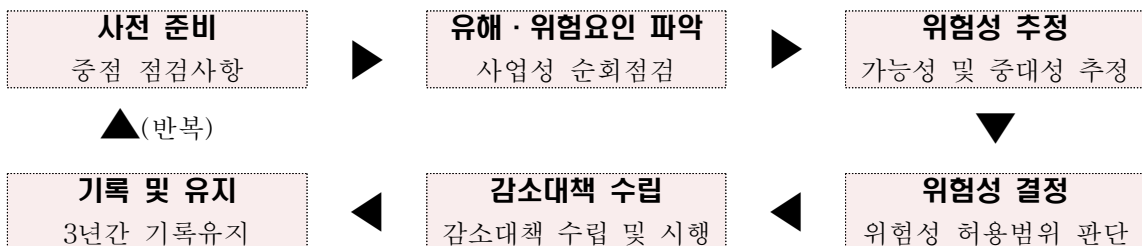
- 점검방법 : 3단계(계획, 이행, 완료) 구분하여, 서류 및 현장점검

- 점 검 자 :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시설팀·분야별 현장직원

- 상·하반기 이행사항 점검 및 결과보고

- 점검사항 : 사고발생 잠재요인 지체 없이 시정

개선계획 및 조치사항 안전보건교육 포함 교육 실시



○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의무이행 확인 점검(외부위탁)

- 추진기간 : 2022. 1. ~ 12.(연 2회)

- 점검내용 : 안전·보건 관계법령 의무이행사항 점검 및 확인 등

3]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체계적 안전·보건 교육·훈련 시행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관리소)

- 지하도상가 관리 중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사전예방
- 평가자 : 관리감독자 및 분야별 직원
- 대상 : 6개 지하도상가관리소 및 글로벌센터
 - ┌ 1차 위험성평가 : 관리소 및 글로벌센터 자체 시행
 - └ 2차 위험성평가 : 시설팀+관리소 합동 점검 후 개선사항 도출
- ※ 방재실 등 현장 근로자(종사자) 유해·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보고

○ 정기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재난대비행동매뉴얼 교육 시행

- 정기 안전보건교육(대면교육+온택트) 시행
 - ※ 온택트 : 안전보건공단 인터넷교육센터 공공기관 과정 수료
- 재난 사고 발생 대비 현장조치 매뉴얼 및 초기대응 등 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근로자 외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	⋮	⋮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VII 행정사항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이행 철저 시달

-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 따른 이행 철저. 끝.